

## ●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-113호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8조 등에 따른 「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6년 05월 11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###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

#### 1. 개정 이유

「담배사업법」 상 담배의 범위를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 내용

영업허가등의 면제 대상인 담배 용도로 니코틴을 판매하려는 자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로 변경

3.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([www.law.go.kr](http://www.law.go.kr))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([www.mce.e.go.kr](http://www.mce.e.go.kr)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